

□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(7차) 전·후 비교표

관련조항	현 행	개 정 안
제4장제3절 4-3-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4-3-1의 각 사항에 대한 자문 결과를 표준협약서에 반영하여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전에 사업시행자등과 협약을 체결한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4-3-1의 각 사항에 대한 자문 결과를 표준협약서에 반영하여 착공 전에 사업시행자등과 협약을 체결한다.